

- 건물에 대한 사항

지번	지목	연면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명	
정릉동 771-7	대	1,565.59	서울특별시	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				

사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
관한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아. 관계도서 비치 :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(☎ 2133-2372)
문화시설과(☎ 2133-4222)
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(☎ 3708-2606)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03호

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8호(2017.8.3.)로 고시된 “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”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결과 일부 결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채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5일
서울특별시

1. 정정사유 : 소송패소에 따른 효력상실
2. 정정내용

<정정전>

3.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: 1개 구역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제3항제4호

연번

구역해제 현황

□ 재정비촉진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구역명	위치	사업방식	면적(㎡)	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(고시번호)
기정	신길6 재정비촉진구역	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	주택재개발사업	36,266.0	2011.9.22. (서고시2011-277호)
변경	해제				

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해제)

○ 용도지역·지구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
○ 토지이용계획 : 폐지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
결정 구분	구분		면적(㎡)		구성비(%)		비고	
기정	합계		36,266		100.0		-	
	정비기반 시설	소계	10,520		29.0		무상귀속	
		도로	5,382		14.8			
		공원	1,491		4.1			
		녹지	3,583		9.9			
		공공공지	64		0.2			
	택지	소계	25,746		71.0		-	
		6-1	25,690		70.8		공동주택	
		6-2	56		0.2		학교 (무상귀속)	
변경	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※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(중로2-2 : 폭원 15m, 연장 357m)는 유효함							

○ 건축시설계획(폐지)

결정 구분	구역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총 수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신길6 재정비촉진 구역	25,690	6-1	25,690	신길동 510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지 시설	30 이하	265.1 이하	평균20/ 최고26	-
변경	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			

※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(중로2-2 : 폭원 15m, 연장 357m)는 유효함

※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지정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

